

연구윤리규정

<전 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 회원들로 하여금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회의 품격을 높이며 연구윤리의 제고를 통한 학술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연구부정 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또는 표절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표절 금지
- 2)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 3) 데이터의 위조, 변조, 조작 금지
- 4) 연구대상자의 권익 침해 금지
- 5) 정당성이 없는 연구 자료의 확보 금지
- 6)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연구자 허위 기재 금지
- 7) 기타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

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장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3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과 문화관련 타 학회 회장의 추천받은 2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의 자격) 연구윤리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문화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문화 관련 학술지에 5편 이상 (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 2) 최근 2년 이내에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3회 이상인자.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은 하지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징계) 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1) 시정 권고
- 2) 경고
- 3)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 회원에 대한 공표
- 4) 해당 회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의 서면 통보
- 5) 학회 홈페이지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6. 학회 발행 학술지에 대한 5년 이하의 투고 또는 게재 금지
- 7)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 8) 회원 제명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